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3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,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, 적용범위, 설립형태(안 제1조~안 제3조)
- 수익사업 등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안 제6조)
- 정관 기재사항과 임직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안 제12조)

- 운영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안 제14조)
- 공무원 파견 등(안 제15조)
- 구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- 공공성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규칙(안 제1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내용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○ 제출방법

가. (우 편)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, 중구청 1층 중구복지서비스재단 통합추진본부(예관동)

나. (이메일) polaris740@junggu.seoul.kr

다. (팩 스) 3396-8657

※ 문의처 : 중구복지서비스재단추진단 윤경희 ☎02-3396-5565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증진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복지서비스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중구복지서비스재단(이하 “재단“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형태)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자원의 발굴·연계·협력
2.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연구·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3.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운영·관리 및 서비스
4.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강화
5. 사회복지서비스 시설간 연계·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
6.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7.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에서 “사회복지서비스 시설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그 적용범위

는 정관으로 정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
2. 기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(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)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
2.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
3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4. 이사회에 관한 사항
5. 회계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7. 해산에 관한 사항
8.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
② 임원은 공개모집 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

장이 임면한다.

- ③ 이사장은 비상임이며,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되,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- ④ 비상임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임원의 직무)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,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1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이사회를 총괄한다.

- ②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그 밖에 이사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제13조(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)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“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③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
3. 기부금
4. 이자수입
5. 그 밖의 수입금

제14조(예산 및 결산)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공무원 파견 등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지원과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적정 인원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·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

2. 임직원의 채용,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임금, 성과급, 퇴직금,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재산의 취득·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

제17조(공공성 및 품질개선) ① 재단의 임직원은 공공성 확보와 복지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재단은 심의·자문을 위한 각종 위원회, 주민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수당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8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